

(공시보고서 표지 - 공통)

## 주요 경영상황 공시

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2012년 03월 14일

금융투자협회 귀중

회 사 명 : 마이어자산운용주식회사  
(영문명) Maia Asset Management Co.,Ltd.  
(홈페이지) <http://www.maiaasset.com>

본 점 소 재 지 :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0 63빌딩 13층  
(전 화) 02-6276-3041

대 표 이 사 : 이 근 경, 길진용

담 당 임 원 : (직 책) 상 무  
(성 명) 서 현 우 (전 화) 02-6276-3046

작 성 자 : (직 책) 과 장  
(성 명) 안 재 하 (전 화) 02-6276-3041

제 출 이 유 :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-59조에 의한 주요 경영상황

※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3조제3항, 동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바목, 같은 항 제2호다목, 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4호라목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-59조에 의한 『법정공시 사항』으로 그 내용에 허위,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제1항제15호에 의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최대주주 변경

1. 변경내용	변경전	최대주주명	대한지방행정공제회
		소유주식수(주)	910,000
		소유비율(%)	35.00%
	변경후	최대주주명	주식회사 리치먼드인베스트먼트
		소유주식수(주)	1,430,000
		소유비율(%)	55.00%
2. 변경사유		주주간 거래	
3. 지분인수목적		주식회사 리치먼드인베스트먼트의 경영권 확대	
- 인수자금 조달방법		주식회사 리치먼드인베스트먼트의 내부 유보금과 유상증자 조달금액	
- 인수후 임원 선·해임 계획		사내이사 1명 선임 예정	
4. 변경일자		2012년 03월 09일	
5. 변경확인일자		2012년 03월 09일	
6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	최대주주의 2011년 12월말 현재 - 자본금 : 2,242백만원 - 자산총액 : 21,343백만원 - 부채총액 : 6,152백만원 - 자본총액 : 15,192백만원	

【세부변경내역】

성명(법인)명	관계	변경전		변경후		비고
		주식수(주)	지분율(%)	주식수(주)	지분율(%)	
주식회사 리치먼드인베스트먼트	변경전 대주주/ 변경후 최대주주	901,000	34.65%	1,430,000	55.00%	
(주)마이어어드바이저스	변경전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	200,000	7.69%	0	0.00%	이근경 주주
이 근 경	변경전 주요주주	200,000	7.69%	0	0.00%	
기타개인주주	-	129,000	4.96%	0	0.00%	

<기재상의 주의>

- 주1) 최대주주수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 때 신고한다.
- 주2) “최대주주명”란에는 최대주주 본인명과 그 특수관계인의 수를 기재한다.
- 주3) “소유주식수”는 변경전·후 최대주주(특수관계인 포함)의 소유주식수를 각각 기재한다. 이 경우 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 및 당해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(신탁계약 등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포함)은 소유주식수 산정에서 제외한다.

- 주4) “소유비율”은 변경전·후 최대주주(특수관계인 포함)의 소유주식수가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(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)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재한다.
- 주5) 기존 최대주주의 지분매각 등으로 인하여 종전 2대주주등이 추가적인 지분 취득 없이 최대주주가 된 경우에는 “3. 인수목적(인수자금 조달방법, 인수후 임원 선·해임 계획 포함)”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관련내용을 상세히 기재한다.
- 주6) 【세부변경내역】은 변경전 최대주주(특수관계인 포함) 및 변경후 최대주주(특수관계인 포함)의 지분변동내역을 모두 기재한다. 이 경우 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은 지분변동내역 산정에서 제외한다.
- 주7) “관계”는 변경전 최대주주, 변경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, 변경후 최대주주 또는 변경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, 변경전·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는 “비고”란에 최대주주와의 구체적인 관계를 기재한다.  
예시) 최대주주 홍길동의 배우자
- 주8) 변경후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당해 최대주주의 재무상태(최근 사업연도말 자본금, 자산총액, 부채총액, 자본총액 등) 기타 변경후 최대주주 관련사항 등을 기재한다.
- 주9) 상기사항 외의 최대주주변경과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.
- 주10) 당해 신고내용이 지주회사(외국지주회사 포함)의 자회사(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포함)에 대한 주요경영사항 신고의 경우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자회사명 및 자산총액비중(%)을 기재하되, 자산총액비중은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대비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주식의 최근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 가액의 비중을 기재하고, 당해 사업연도중 편입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의 비중을 기재한다.

### 주요주주 변경

1. 변경내용		주요주주 제외	
2. 변경된 주요주주명		이근경	
-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		당사 공동대표이사	
3. 변경내역	변경전	소유주식수(주)	200,000
		소유비율 (%)	7.69%
	변경후	소유주식수(주)	0
		소유비율 (%)	0%
4. 변경사유		주주간 거래	
5. 변경일자		2012.03.09	
6. 확인일자		2012.03.09	
7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	-	

#### <기재상의 주의>

- 주1) 법 제1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가 변경된 사실을 확인한 때 신고한다.
- 주2) 주요주주의 추가 및 제외 등이 복수로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신고한다.
- 주3) “변경내용”에는 “주요주주 추가”, “주요주주 제외”로 구분하여 기재한다.
- 주4) “소유주식수” 및 “소유비율”은 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주요주주의 소유주식수 및 비율을 기재한다.
- 주5) 상기사항 외의 주요주주변경과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.
- 주6) 당해 신고내용이 지주회사(외국지주회사 포함)의 자회사(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포함)에 대한 주요경영사항 신고의 경우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자회사명 및 자산총액비중(%)을 기재하되, 자산총액비중은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대비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주식의 최근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 가액의 비중을 기재하고, 당해 사업연도중 편입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의 비중을 기재한다.

(제10-11-1호)

### 주주총회소집 결의

1. 일시	2012.03.23	
2. 장소	당사 대회의실	
3. 의안 주요내용	1. 정관 일부변경(안)의 건 2. 공동대표이사 체제 폐지의 건 3. 이사선임의 건	
4. 이사회 결의일(결정일)	2012.03.09	
-사외이사 참석여부	참석(명)	3
	불참(명)	0
-감사(감사위원) 참석여부		1
5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-	

#### 【이사선임 세부내역】

성명	생년월일	임기	신규 선임여부	주요경력	현직	최종 학력	국적

#### 【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】

성명	생년월일	임기	신규 선임여부	주요경력	현직	최종 학력	국적

#### 【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】

성명	생년월일	임기	신규 선임여부	주요경력	현직	최종 학력	국적

#### 【감사선임 세부내역】

성명	생년월일	임기	신규 선임여부	주요경력	현직	최종 학력	국적

#### 【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】

구 분	내 용		이 유
1. 사업목적 추가			
2. 사업목적 삭제			
3. 사업목적 변경	변경 전	변경 후	

**【집중투표제 도입·배제 세부내역】**

구 분	변경 전	변경 후
집중투표제 도입		
집중투표제 배제		

<기재상의 주의>

- 주1) 상법, 정관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의한 때 신고한다.
- 주2) “의안 주요내용”은 의안 안전별로 요약하여 주요내용을 기재하되, 사업목적 변경, 이사·사외이사의 선임, 감사(감사위원회 위원포함)선임, 집중투표제 도입·폐지안건은 해당 세부내역서식에 따라 별도로 기재한다.
- 주3) 임원선임의 경우 “의안 주요내용”에 “상근이사 ○명, 비상근이사 ○명, 사외이사 ○명, 감사위원 ○명, 감사 ○명 선임” 등의 방식으로 임원 선임의 내용을 기재하고, 임원해임의 경우 “의안 주요내용”에 해임임원별로 각각 해임사유, 인적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.
- 주4)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선임은 **【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】** 란에 기재한다.
- 주5) “신규선임여부”는 “신규선임” 또는 “재선임”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.
- 주6) “주요경력”은 선임일로부터 과거 5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주요경력을 기간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.
- 주7) “현직”은 신고일 현재 당해임원의 소속기관명 및 직책을 기재하되, 다른 상장법인의 임원(상근·비상근이사, 사외이사, 감사위원, 감사)인 경우에는 그 임기를 함께 기재하며, 임원선임 이후 퇴임여부·시기 등을 함께 기재한다.
- 주8) **【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】** 의 “사외이사 여부”는 “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” 또는 “사외이사인 감사위원”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.
- 주9) **【감사선임 세부내역】** 의 “상근여부”는 “상근” 또는 “비상근”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.
- 주10) **【집중투표제 도입·배제 세부내역】** 은 도입하는 경우 “변경 전”에 “배제”, “변경 후”에 “적용”을 기재하고, 폐지하는 경우 그 반대로 기재한다.
- 주11) 상기 기재사항 외의 외부감사인 변경 등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.
- 주12) 당해 신고내용이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주요경영사항 신고의 경우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자회사명 및 자산총액비중(%)을 기재하되, 자산총액비중은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대비 지주회사가 소

유하고 있는 자회사주식의 최근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 가액의 비중을 기재하고, 당해 사업연도 중에 편입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의 비중을 기재한다.(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자회사명 및 자산총액비중(%)을 기재하되, 자산총액비중은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연결자산총액 대비 자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비중을 기재한다)